

“학교 특기적성교육 정상화, 비정규직 강사노동자 권익 보호”

# 기자회견 자료

2005년 03월 09일

## 학교 특기적성교육 정상화와 비정규직 강사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전여민회, 여성해방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전충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대전지부, 참여자치대전시민연대)

## 학교 특기적성교육을 정상화하고, 비정규직 강사노동자들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임금착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초·중등학교에 약 1,000여 명의 특기적성교육 강사들(2003년 기준, 초등학교 881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47명)이 6개월 혹은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부분의 초등학교(100%, 2004년 10월 기준)와 중등학교(중학교 92%, 2004년 10월 기준)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에 지역 내 불법파견근로업체들이 개입하여 강사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등 그 파행적이고 탈법적인 운영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학교 특기적성교육 정상화와 비정규직 강사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그 실태를 고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강사파견업체와의 계약은 노동부 장관의 강사파견업체 허가증 발급이 불가하여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강사파견 업체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특기·적성교육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초등학교에서 불법강사파견업체가 파견한 특기적성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으며 특기적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들 불법파견근로업체들은 노동부장관이 강사파견업체 허가증을 발급할 수 없으므로 그 설립 및 운영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불법파견업체들이 난립해 특기적성강사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각 학교에 파견하고 그 통장을 관리하면서 보수의 50% 이상을 알선료와 교재교구사용료 등으로 부당 취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아예 이런 현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은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파견강사들의 부당 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불법파견업체들이 부당 취득한 이익금을 파견강사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사건 2004가소156844 부당이득금)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불법파견업체들은 사무실을 개설하고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장들을 상대로 강사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등록되지 않은 강사는 학교 현장에 특기적성강사로 취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현실구조 속에서 일부 업체들은 사업자 등록증에는 교재·교구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강사를 소개 알선하고 강사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보수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다. 이렇게 특기적성교육의 불법운영과 부당임금취득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강사들 대부분이 여성들이고,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기적성교육 강사들은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과 직접 개별 계약한 뒤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심의로 강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개별 계약형태를 갖추지만 강사파견업체와의 이면계약으로 그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 사실은 학교 관리자 등과의 음성적인 금품거래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더욱이 무리한 특기적성교육 강행으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0교시가 나타나는 등 학교정상화에도 역행하고 있고, 컴퓨터·외국어·과학교육 등 많은 특기적성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적절한 활동인지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특기적성교육 정상화와 강사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한다.

#### <특기적성교육 정상화와 강사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1. 불법파견업체 난립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특기적성강사 인력풀’을 운영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장은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만을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맺도록 한다.(현재는 제한적인 특기적성강사 인력풀 운영)
2. 교육청은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불법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3. 교육청은 특기적성교육 활동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설강좌에 대한 심의기구를 만들어 강좌 및 강사 등록을 일원화하고, 각급 학교는 등록된 강좌만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교육청 심의기구에는 학부모와 교원단체가 교육청 담당자와 동수로 참여하도록 한다.

4. 교육청은 특기적성교육 강사들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1) 불법파견업체의 강사노동자 임금 착복 사례모음 1부

참고자료 2) 불법파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참고자료 3) 불법파견업체의 인터넷상 강사모집 구인광고 사본 1부

참고자료 4) 학교장 요구에 따라 작성된 서약서 사본 1부

참고자료 5) 특기적성교육 관련 강사계약서 사본 1부

참고자료 6) 불법파견 A업체의 학교별 부당이득금 내역 사본 1부

참고자료 7) 불법파견 A업체의 수입지출 비교표 사본 1부

참고자료 8)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회신공문(문서번호 초등교육과-1550, 2004.05.03) 사본 1부. 끝.

2005년 03월 09일

## **학교 특기적성교육 정상화와 비정규직 강사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전여민회, 여성해방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전총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대전지부, 참여자치대전시민연대)

## 참고자료 1) 불법파견업체의 강사노동자 임금 착복 사례모음 1부

### <사례 1>

업체명 : 대전○○레고교육원(대표 강00) - 사업자등록증상 교재교구 도소매판매업

강사 : 김00, 함00

대전○○레고교육원은 2003년 1월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에 강사들을 파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강사들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대전○○레고교육원과 관련하여 1년간 특기적성교육 강사를 하다 2004년 4월에 대전○○레고교육원과 결별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 당시 업체에서 나온 사람들은 총 7명으로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했던 강사가 2인, 유치원 대상 강사가 3인, 그리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유치원 대상 강사가 1인입니다.

본인들은 2003년 1월 대전○○레고교육원에서 레고닥타 강사를 모집한다는 얘길 듣고 교육을 6주 동안 받았습니다. 당시까지는 초등학교에 파견 나간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3월에 업체에서 초등학교에 가서 계약서를 체결하라는 말을 듣고 학교에 가서 특기적성 강사로 학교장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00은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함00은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 각각 강사로 파견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인적으로 학교에 제안서를 넣은 적이 없고 업체 사장이 교장과 면담하여 구두로 계약을 약속받고 강사를 파견 보내어 계약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함00은 ○○초등학교에 강00 사장이 먼저 교장을 만나고 있는 자리에 불려가게 되어 그날 교장과 인사를 하고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전에 다른 레고닥타 강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강사는 재계약이 안 되고 본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다른 학교에서 비밀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강00사장은 그 이전부터 특기적성교육 영어강사들을 모집해놓고 각 학교에 파견강사를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영어 파견강사를 하면서 맺어놓은 학교장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레고닥터도 자연스럽게 파견강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는 업체 사장이 알선을 하여 강사들을 파견 보내는 형태로 운영되지만 특기적성교육 지침상 업체개입은 불법임으로 학교에서는 수강료를 강사 통장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강사들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사무실에서 통장을 관리하여, 학교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업체에서 모두 가져가고 강사들에게는 매달 5일자로 시간급 급여로 지급하였습니다.

학급당 20명 기준으로 2반을 운영한 강사들 급여지급은 주당 180분에 46,000원을 지급하였고, 영어강사는 대략 5 : 5비율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는 강사 경력에 조금씩 차등을 둔다고 들었습니다.

**파견강사노동수입 : 아동1인당 30,000 × 20명(1학급) = 600,000원**

**파견강사 월수입 : 시간당인건비 20,000원 × 주 3회 × 월 4주 = 200,000원**

당시 대전○○레고교육원에서는 영어와 레고닥타 강사들을 파견하고 있었고 사무실 구성원이 사장2명, 과장 1명, 직원이 4명, 배달원 2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레고닥타 강사는 14명 정도 영어강사는 30여명 정도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중국어강사도 모집하여 16명의 강사를 확보하고 각 학교에 파견하였습니다.

#### - 초등학교 강사 알선 소개와 관련하여

강00 사장은 직접 학교장들을 찾아가서 특기적성 수업에 관해 중국어, 영어, 레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후 강00의 연락처와 이름으로 과목안내 및 개설을 한 후 수업이 진행되는 동시에 강사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사무실에서는 한 달에 200만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매달 지급을 받았고, 그 돈의 출처는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특기담당교사등의 로비자금으로 쓰이는 돈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00 사장이 두당 30만원씩 무조건적으로 바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도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거나 영업을 포기할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사례 2>

업체명: 집중기억속독부(00회사)

강사:

#### -00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

회사는 입사하자마자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게 하고 모두 가져가서 월급을 관리합니다. 학교에서 제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사장은 그 월급의 40%를 저에게 주고, 소개비라는 명목 하에 나머지 60%를 취합니다. 결과적으로 착취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입사 후 일 년이 지난 경우 5%씩 추가로 올려주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당한 대우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개인으로 학교에 임하여 수업진행도 회사에 있을 때보다 더 신경 쓰고 교육적으로도 아이들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습니다. 00 회사에

있을 때는 보조자료 복사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해야 했고 아이들 화일이나 부교재도 각자 선생님들이 회사에 돈을 내고 가져갔습니다. 또한 학교에 내는 세금까지 저희 선생님들이 내야 했습니다.

회사는 저희가 2월까지 계약 만료되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제 사정이야기를 하고 개인으로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교장선생님께서 “회사가 그만두면 저두 그만두어야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는 “2월달까지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부탁드리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할테니 와서 이야기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다음날 서기로 보이는 여자분께 결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특기담당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그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전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고 20개가 넘는 특기적성 기존 선생님들은 그대로 하시는데 굳이 왜 전 그만두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선생님을 학교로 파견했더군요.

회사와 교장교감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 억울하게 왜 그만두어야하는지도 모른 채 나와야했습니다.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정당한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 <대전00초 사례>

2002년에 대전00초등학교는 학교 컴퓨터실 시공하는 조건 하에 업체에서 추천하는 강사를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에듀박스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강사 근로 조건-

가. 아동 1명당 3만원의 수강료를 받는다.

나. 강사 1인당 아동 190명을 가르친다는 기준으로 하여 월급(기본금+수당)을 100만원을 받는다(단, 아동이 190명 미달일 경우 봉급에서 감한다

※ 2005년 겨울방학에는 아이들은 120명 정도이며, 1반당 30명씩 4개 반을 조직하여 특기적성 교육을 하고 있음(학기 중에는 200명 정도 됨)

※ 1교시 07:5008:30, 1시5시까지 수업(총4시간 수업담당, 40분 수업)-초등학교 0교시 수업실시.  
현재 대전시내 30개교 학교가 ○○박스와 계약하고 있다고 함.